

□ 스마트 안전장비 적극 도입 및 지원사업 신청

- (국토교통부·국토안전관리원)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·소 규모(300억 미만) 건설현장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(매년, 상시) 추진
 - * (신청방법) 국토안전관리원 사이트 접속 → 공지사항 → 해당년도·지역 “스마트” 검색
- (고용노동부·산업안전보건공단) 중·소사업장(현장)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(최대 3천만원) 지원
 - * (신청방법) clean.kosha.or.kr → 공지사항 →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

□ 사업주의 안전관련 의무사항

- (적용대상)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
 - * 경영책임자 : 사업을 대표·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(CEO)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- (의무사항)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
 - * 「중대재해처벌법(‘22.1.27.)」제4조제1항(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)

<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조치 필요사항 >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에 관한 조치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③ 정부부처·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·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④ 안전·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- (일일 안전교육 실시) 현장관리자는 당일 공사 착수전 근로자의 건강상태 점검, 당일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실시
- (건설안전 SNS 가입) 우리 청에서 운영중에 있는 “영남건설안전 365(카카오톡채널, 네이버포스트)” 채널 가입, 각종 자료* 현장 활용
- * 건설공사 주요 지적 사례, 사망사고 현황 및 사고 예방 대책, 재해예방 안전기준, 건설안전 우수사례,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자료 등에 대한 정보제공 중